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73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강서·양천·구로·금천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 나.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에 2개 센터(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고척동 소재)를 운영하고 있음.
- 다. 이 중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한 서남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3개분소 포함)가 금년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라.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 운영현황

구분	서남권 센터				고척동 센터
	신월동본소(총괄)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	
위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상가동 116호	금천구 벚꽃로60 라이프(아)상가동 2층 102호	구로구 고척로 51나길 25
사무실 면적	231.4㎡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으로 구성)	48㎡ (사무실, 민원상담실로 구성)	18.8㎡ (사무실, 민원상담실로 구성)	46.9㎡ (사무실, 민원상담실로 구성)	52㎡ (사무실, 민원상담실로 구성)
수탁기관	(사)항공기소음				(사)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탁기간	'19.1.1.~'21.12.31. (최초 : '16.11.18~'18.12.31)	'20.8.25.~'21.12.31.			'20.9.1~'22.12.31
인력	센터장1, 사무국장1, 연구원1, 민원상담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센터장1, 사무지원1
연소요예산	448백만원	139백만원	139백만원	139백만원	165백만원
비고	재위탁 동의 대상				

나. 주요 추진사업(최근3년, '19년 ~ '21년 6월)

○ 항공기 소음에 관한 민원 및 피해에 대한 상담

- 대상지역내 홍보를 통하여 항공기 소음에 대한 민원 수렴 ('21년 6월 기준 9,183건 민원접수)
- 내용에 따라 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에 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 양천,강서,구로,금천 등 지역에 『찾아가는 공항소음 안내』 사업 ('19년 59회 운영, '20년 코로나19로 취소, '21년 상반기 12회 운영)

<민원 접수 및 상담·안내 현황>

민원 내용	2019	2020	2021(6월)	합계
합계	5,129	2,533	1,521	9,183
전기로 신청 접수 및 문의	1,829	1,199	165	3,193
냉방시설 신청 및 유지보수	1,124	695	458	2,277
방음시설 신청 및 유지보수	357	142	125	624
대책지역 포함 여부	556	175	334	1,065
TV수신료 신청 접수	11	9	6	26
항공기소음 불만 및 측정요구	917	94	242	1,253
대책사업 불만 및 제안	37	115	127	279
기타	298	104	64	466

○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추진 (55개소)

- 양천구 등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 소음측정 지원하여 소음지도 이상유무 확인 및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내용 전달
- '19년(41개소) : 소음측정 요청지 28개소 및 실내소음 13개소 측정
- '20년 :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사업 미추진
- '21년 6월(14개소) : 소음측정 요청지 14개소 측정

○ 공항소음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6건)

- 공항소음에 대한 조사·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공항소음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연도	구분	내용	건수
2019년	토론회	방음시설 사업 개선 토론회 공항소음 학습권 침해 및 대책방안 토론회	2건
	조사·연구	일본 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처 조사 및 자료 발간	1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어린이집 공항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 (2021년부터 법률 시행)	1건
2020년	토론회	코로나19로 취소	-
	조사·연구	독일의 항공기소음 관련법 조사 및 자료 발간	1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공항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사업 개선을 위한 청원	1건

○ 공항소음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추진

- 캠페인 일환으로 『공항길 걷기대회』 대회 추진 ('19년, 1,000명 참가)
- 공항소음 그림·사진·UCC공모전 진행 ('20년 797건 접수)
- 공항소음 아카데미 진행 ('19년 132명 참가)
- 공항소음 자료실 및 공항소음지도 서비스 운영
-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항공기 소음 대책사업 지원 소식지 발행 (5회) 및 배포



○ 피해지역민과 소통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 사업보고회 개최 : 2회 ('19년 12월, '20년 12월-온라인)
-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개최 : 4회
- 공항소음 활동가 및 단체의 참여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소음피해시민권리찾기운동,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등 참여)

○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 서울시, 자치구, 한국공항공사 등 민원처리, 정보교류 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 강화 추진
-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중요 민원 등 각 기관별 민원처리 개선 및 추가 지원사항 등 협의 추진

다. 재위탁 추진 내용

○ 위탁기간 : 3년 (2022. 1. 1. ~ 2024. 12. 31.)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 위탁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조례」 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연간 865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재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신 규(공모) : '16.11.18.~'18.12.31 (사)항공기소음
 - 2차 재위탁(공모) : '19. 1. 1.~'21.12.31 (사)항공기소음

마.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사업 안내, 관련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필요
- 해외사례 등의 조사·연구와 주민 자문위원회, 주민토론회, 사업보고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선사업(정책개선안 마련 및 법률개정 청원 등) 추진 필요
- 공항소음 피해 지역민들은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수년간의 누적된 불신이 있으므로,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공항소음 관련 활동을 해 온 지역기반 공항소음전문 활동 단체에서 사업 추진 필요
-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 측정자격, 경험 등이 필요하므로 소음 전문단체에서 센터 운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21.6)

※ 작성자 :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팀 권소진 (☎2133-4254)